

# 품질인증제도의 정책방향

공업진흥청 품질환경인증과 과장 윤교원

설계·생산 및 서비스 등 일련의 산업활동을 최적상태로 유지와 관리가 가능한 ISO 9000 인증제도는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세계 76개국에서 국가 규격으로 채택·운영중에 있으며, 동남아(싱가폴)와 중동 및 일본의 건설성은 96년부터 공공공사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ISO 9000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렇듯 품질보증체제가 새로운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

## ISO 9000 인증제도는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

### ■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대응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세계 무역질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경쟁의 범위가 공산품 위주에서 농산물과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축소, 10년내 쿼타 철폐, 보조금 제한 등 세계경제가 국경없는 무한경쟁 체제에 진입했다.

「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가 당면과제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그 중요성이 크다.

우리 경제는 90년 이후 연평균 7.6%의 고성장과 세계 12위의 무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나 1996년 OECD 가입과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여건상 새로운 전략 없이는 전진에 한계가 있다.

① 조기에 무역적자의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무역적자(백만불) : (93년) 1,534 → (94년) 6,

335]

②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쟁력은 18개 NIES중 91년 3위에서 94년 9위로 하락

③ 기술수준과 생산성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열세에 있다. [설계수준 40~60%, 생산기술 60~80%, 생산성 : 일본의 1/2수준]

특히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리우선언」 이후 환경(GR)·노동(BR)·기술정책(TR) 등이 무역과 연계되어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WTO내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문제가 무역과 연계되어 논의중에 있고, 96년 가입 예정인 OECD에서는 상품자체에 대한 규제에서 생산공정에 까지 규제(PPMS)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 우리의 대응

WTO체제 출범에 따른 세계화·개방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산업경쟁력의 제고가 유일한 길이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종래 산업정책의 근간이 되어 온 금융정책, 조세정책, 합리화 및 투자조정, 업종전문화 등 각종 산업정책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정부는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Rules과 장」을 마련하고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술 및 인력개발, 환경보호 투자 등 인프라분야에 주력하는데 중점을 둔다.

기업은 「품질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하며 소비자 선택권리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경영(QM)운동을 기업별·공장별·부서별로 정착하게 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품질·환경경영 보증체제」의 도입으로 고객 지향적 경영혁신 및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의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하다.

### ■ 품질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품질보증체제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해야 한다. ISO 9000 인증제도는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세계 76개국에서 국가 규격으로 채택 운영중이다. [ISO 9000인증건수(94년 6월 현재) : 70,517건]

품질보증체제가 새로운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대비책이 필요하다.

90년대 초반부터 철강·조선·해상구조물 등에 대한 해외바이어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3사(클라이슬러, 포드, GM사)는 96년 1월부터 모든 납품업체에게 ISO 9000인증획득을 의

무화하도록 선언했다.

EU는 강제인증제품과 임의인증제품으로 분류하여 강제인증제품(CE마크 표시제품)에 대하여 ISO 9000품질시스템을 요구중이다.

해외건설시장에서 품질보증수단으로 ISO 9000의 인증 요구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남아(싱가폴), 중동 및 일본의 건설성은 96년부터 공공공사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ISO 9000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ISO 9000 품질보증시스템은 설계, 생산 및 서비스 등 일련의 산업활동을 최적상태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경영체제의 구축으로 외부로부터 제품의 신뢰도 및 성과 제고, 기업경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및 제합성이 제3인자(인증기관)에 의하여 보증되므로 고객지향적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 ■ 세계 인증동향 및 향후전망

#### 가] 주요국의 인증동향

최근 ISO 9000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증활동이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94년 6월 현재 ISO 9000 인증건수는 세계 76개국에서 70,517건이 보급중다.

#### 나]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 및 향후 동향

ISO 9000 인증제도의 최종목표는 인증결과 및 인증기준에 있어서 국가간 상호인정체제의 확립에 두고 있다.

현재 모든 국가가 ISO 9000 규격에 기초하고 있으나 인증기관 및 심사위원의 등록기준 등 운영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간 상호인정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중에 있다.

① QSAR(품질시스템' 상호인정기구 : Quality System Assessment Recognition) 설립 추진

	93년 1월		93년 9월		94년 6월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 체	27,824	100	46,546	100	70,517	100
영 국	18,577	66.8	28,096	60.4	36,823	52.2
미 국	893	3.2	2,059	4.4	3,960	5.6
호 주	1,668	6.0	2,695	5.8	3,710	5.3
독 일	790	2.8	1,534	3.3	3,470	4.9
프랑스	1,049	3.8	1,586	3.4	3,359	4.8
네덜란드	716	2.6	1,502	3.2	2,718	3.9
이태리	188	0.7	864	1.9	2,008	2.8
일 본	165	0.6	434	0.9	1,060	1.5
기 타	3,778	13.6	7,776	16.7	13,409	19.0
국가수	48		60		76	

자료) ISO 9000 NEWS(1995.1-2월) The MObil Survey

- 인증기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ISO/IEC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96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② IATCA(국제심사원인증협회 : International Auditor and Training Certification Association) 설립 추진

- 각국의 심사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국제 통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국의 인정기관 및 등록기관이 참여중이며, 지난 95년 7월말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와는 별도로 PAC(태평양지역 상호인정협의회), IAF(국제인증포럼) 등 민간단체에서도 개별모임을 통해 상호인정 기준을 마련중이다.

### ■ ISO 9000 인증제도 현황 및 시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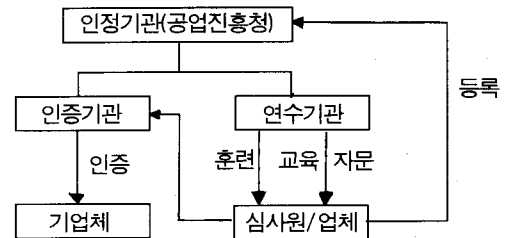
#### 가) 현황

##### (1) 도입경위

- ① 1992년 4월 : ISO 9000을 KS A 9000으로 채택
- ② 1993년 10월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및 일반기준고시
- ③ 1993년 12월 : 한국품질인증센터를 최초 국내인증기관으로 지정
- ④ 1994년 2월 : 동양피스톤에 최초의 인증서 발급

⑤ 1994년 7월 : 품질경영촉진법 등 관련 법령 제정 완료

#### (2) 인증제도의 운영체제



#### (기능)

- ①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
    - 인증제도 관련법규의 제·개정
    - 인증/연수기관에 대한 지정심사
    - 인증/연수기관의 승인 및 사후관리
    - 인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
  - ②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 인증심사업체에 대한 시스템 평가
    - 인증 및 사후관리
  - ③ 연수기관(Training Body)
    - 심사원 양성과정 교육
    - 심사원 자격유지 교육
    - 업체에 대한 지도 및 자문
- (3) 인증/연수기관 운영현황

① 지정기준(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상의 인증/연수기관 지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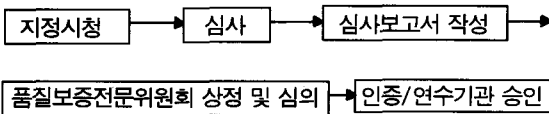
[인증기관]

- 품질보증체제 인증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인증범위(운영요령상의 35개 인증범위) 별로 최소 2명 이상의 심사원 확보

- 인증업무 규정을 갖추고 이를 수행할 능력 보유

② 승인절차



③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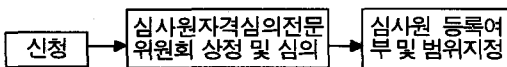
구분	기관명	승인일자
인증기관	- 한국품질인증센터(KSA-QA)	93. 12. 26
	- 한국능률협회 품질인증센터(KMA-QA)	94. 2. 26
	-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센터(KPC-QA)	94. 3. 22
	- 생산기술연구원 품질평가센터(KAITECH)	94. 2. 5
	- 한국품질보증원(KSA-QA)	94. 5. 24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94. 12. 1
	- 한국화학시험연구원(KOTRIC)	95. 3.
연수기관	- 한국표준협회(KSA)	94. 2. 6
	- 한국능률협회(KMA)	94. 12. 29
	- 한국생산성본부(KPC)	94. 2. 15
	- 품질관리기사회	95. 3.
	- 중소기업진흥공단	95. 9. 16

(4) 인증심사원 현황

① 인증심사원 구분(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인증심사원구분	자격요건
선임심사원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자 ○200시간 이상의 인증심사 경험이 있는 자
심사원	○심사원보 자격을 보유한 자 ○160시간 이상의 인증심사 경험이 있는 자
심사원보	○고등학교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7년 이상의 품질경영 실무경력이 있는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의 품질경영 실무경력이 있으며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② 승인절차



(5) 인증획득업체 현황

95년 8월 31일 현재 총 635업체 (국내 229개)		
규모	대기업 (46%)	중소기업 (54%)
업종	제조업 (90%)	비제조업 (10%)
* 건설 : 28업체		

(6) 인증분야

한국산업분류코드(KSC 5150)에 의거 35개 분야로 구분

나. 문제점

(1) 공급측면

① 심사원 부족

- 심사원수 및 분야별 전문심사원의 부족

- 건설분야 10명(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② 심사원의 이탈

- 심사원의 부족에 따른 이탈현상

- 경제적 수입이 유리한 컨설팅이나 지도 업무로의 전환

(2) 수요측면

① 인증획득의 전시효과에 치중

- 품질보증체제의 내실화 보다는 대외 전시효과나 이미지 홍보에 치우침

② 최고 경영자의 인식부족

- 품질경영에 대한 관심 부족

- 품질관리부서의 전담업무로 파악

③ ISO 9000에 대한 정확한 이해 미흡

- 제품 인증제도와 동일시

- 품질시스템의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
- ④ 중소기업 담당자의 능력문제

**다. 95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주요사업 방향**

**품질경영 인증확대 및 기반강화**

(1) 95인증획득 목표 및 방향

① 추진방향

인증업체가 제조업·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도록 인증기관의 지정을 업종별로 다각화하고 외국 인증기관도 제도권내로 적극 수용

② 인증획득 기업수

1994(300개) → 1995(700개) → 2000(5,000개)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활동범위 확대

① 인증기관 지정확대

- 94년(6개) → 95년(15개)

- 국내기관(선급협회, 산업건설연구원, 건자재시험연구원 등)과 외국기관(LRQA, SGS 등) 확대 및 전문화 추진

② 인증기관의 활동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 S/W, 서비스분야로 다양화

(3)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①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강화

② 사후관리 강화(Peer Review 시스템 도입 등) 및 상시 관리체제 구축

**연수기관의 지정확대 및 탄력적운영**

(1) 연수기관 지정계획

94년(3개) → 95년(7개) : 건설관련 전문연수기관 등

(2) 지방연수과정 개설 및 교육내용의 고급화

① 서울 중심의 연수기관을 수도권 및 지방으로 점진적·탄력적 확대 운영

② 외국 교육프로그램의 적극 도입으로 교육내용의 고급화 도모

**강사 및 심사인력확충 및 자질향상**

(1) 강사인력 확충 및 교수능력 제고

① 강사수 확대

② 외국 유명 교육과정의 국내 개설

(2) 심사원 확충 및 자질향상

선임심사원	94년 ( 29 ) → 95년 ( 90 )
심사원	94년 ( 50 ) → 95년 ( 150 )
심사원보	94년 (677) → 95년 (1,000)

인증기관간 「심사원보 Pool제」 도입을 실시하고, 심사원보를 진단지도 사업에 투입하며 소요 일수를 실무경험으로 인정하는 등 심사원보 실무 훈련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품질경영 진단지도의 내실화**

품질경영진단제도란 제정과 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내부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95년중 200개 업체에 대해 진단지도를 실시하되 업체별로 기간차 등을 두어 정부주관 시험에 합격한 진단사를 파견하여 상주시켜 지도하는데, 진단지도 소용비용의 일부는 제정에서 지원토록 하되 지도진척도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95년 하반기 품질경영 진단 신청업체 40개사 중 제조업분야에서 건설분야로 사업을 전환한 업체는 12개사이며 나머지 업체는 서비스 등 비제조업분야로 사업을 전환하였다.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1) 외국과의 상호인정 확대

① 국가간 상호인정 지속 추진

호주, 일본 이외에 유럽, 미국 등과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기체결된 MOU 내용에 따른 상호교환 심사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국내·외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체결을 확대 추진한다.

(2) 국제기구 및 회의에 적극 참여

ISO TC 176 및 ISO CASCO(인증위원회) IATCA(국제심사원 상호인정기구) 회의 참여 PAC(태평양지역 상호인정 회의) 참석 등 국제기

구 및 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3)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ISO 9000 인증제도 지원강화

(1) 지방순회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한다.

(2) 조세, 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

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물자 구매시 ISO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관련규정 개정

② KS 공장심사기준이 ISO 9000 규격으로 대체

③ 품질경영 100선 기업선정시 ISO 9000 인증 획득을 지정요건으로 반영

④ 인증획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감면법 개정 1995년 4월)

⑤ 인증획득 업체에 대하여 병역특례 요원을 우선 배정토록 추진

⑥ 외국인 근로자의 ISO 9000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반영 추진

⑦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ISO 9000 인증업체에 가산점 부여(품질수준 40점)

⑧ 기술신용보증기금 심사시 가산점 부여(6억 까지 간이심사, 5점→40점)

⑨ 수도법시행령에 ISO 9000 인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인증관련 민간지원 조직의 확충**

분산되어 있는 인증관련 조직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조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된 민간대표기관인 「가칭 품질환경경영인증협회」의 설립을 추진하여 추후 인정기관으로서 승격할 것을 검토한다.

**■ 환경인증제도(ISO 1400)의 도입 및 대응 방안**

**가) 도입배경**

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에서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를 개최하고 「리오선언」를 천명했다. 89년부터 동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UNCED사무총장은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위원회(BCSD)를 설립했다.

91년 8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SAGE(환경정책자문그룹)를 설립했으며, SAGE는 92년 1월 UNCED에 환경경영관련 건의문을 상정하고 10월에는 ISO에 새로운 기술위원회(TC)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93년 1월 선진국 및 주요 중진국 46개국과 UNCED 등 15개 국제기구가 참여, ISO 산하에 기술위원회인 「ISO/TC 207」를 창설하여 6개 SC 및 1개 WG를 두어 ISO 14000 규격 제정 임무를 부여하였다. 현재 환경인증규격인 ISO 14000 및 가인드라인 등 초안을 착성 완료하였으며 환경 국제규격 제정 및 인증 실시가 예상된다.

**외국의 동향**

유럽은 93년 6월 친환경경영 및 감사규정(EMAS)를 제정했으며 일본과 호주 등도 ISO 14000 규격 제정에 대비하여 시범 인증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나) 대응방안**

ISO 14000은 ISO 9000 품질시스템의 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제 환경경영인증제도를 국내에 도입·실시하기 위하여는 관련제도의 정비 및 환경인증 관련 기반구축이 관건이다.

**(1) 환경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대책반 구성 및 가동**

① 93년 12월 경영자총협회내에 「국제환경경영표준화대책반」을 두고, 산하에 6개의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중이다.

- ISO 9000 초안을 기초로 잠정표준규격 작성
- ISO/TC 207 등 국제회의에 참여 및 동향 파악, 기업체에 정보제공

심무작업반	간사기관	비 고
환경경영체제반	삼성	본 대책반에 국내 90여개 업체의 관련 전문가 200명이 활동중
환경감사반	선경	
환경리벨링반	환경보전협회	
환경성과평가반	현대	
라이프사이클 분석반	LG	
제품규격제정반	대우	

② 추진실적(94년도 사업예산 1억2천만원)

- ISO/TC 207 산하 국제회의에 25회 참석
- 국내 환경대책반 세미나 및 표준화 검토회의 등 50회 개최

(2)환경경영 인증제도(ISO 14000)의 본격 추진

① 추진목표

96년 하반기부터 「환경경영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 환경경영 인증제도의 기반을 구축한다.

- 환경심사원의 양성 : (96년)80명→(97년)200명

- 환경인증 후보기관의 지정 : (96년)10개(현재 5개 기관)

- 환경심사원 연수기관의 육성 : (96년)4개(현재 1개 기관)

② 추진개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인증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시범인증사업을 실시하여 96년 본격 인증에 앞서 인증관련 기반을 구축한다.

③ 「환경시범인증사업」의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95년 4월~11월(8개월)

- 참여업체 : 호남정유, 유공, 코오롱건설 등 39개사

- 추진방법 : △ 시범인증 지도업체의 선정 및 대상업체 진단·지도 △ 심사원양성,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작성 △ 환경관련기법 개발, 환경시범인증업체 선정 등

④ 시범인증결과 활용방안

96년부터 본격 실시될 환경인증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참여업체는 환경경영 모범업체 표

시를 허용하고 인증우선권을 부여한다.

(3)단계별 추진일정

① 환경경영 인증제도 준비(95년) : 인증제도 운영요령 및 규격 마련 심사원 양성 등

② 시험인증(Pilot Program) 실시(95~96년) : 관련규정의 시험적 운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③ 환경경영 인증제도 본격가동(96년중) : 인증/연수기관 지정·운영  
200명

-환경인증 후보기관의 지정:(96년)10개(현재 5개 기관)

-환경심사원 연수기관의 육성:(96년)4개(현재 1개 기관)

② 추진개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인증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환경시범인증사업을 실시하여 96년 본격 인증에 앞서 인증관련 기반을 구축한다.

③ 「환경시범인증사업」의 추진 개요

-사업기간:95년 4월~11월(8개월)

-참여업체: 호남정유, 유공, 코오롱건설 등 39개사

-추진방법: △ 시범인증 지도업체의 선정 및 대상업체 진단·지도 △ 심사원양성,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작성 △ 환경관련기법 개발, 환경시범인증업체 선정 등

④ 시범인증결과 활용방안

96년부터 본격 실시될 환경인증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참여업체는 환경경영 모범업체 표시를 허용하고 인증우선권을 부여한다.

(3)단계별 추진일정

① 환경경영 인증제도 준비(95년): 인증제도 운영요령 및 규격 마련 심사원 양성 등

② 시험인증(Pilot Program) 실시(95~96년): 관련규정의 시험적 운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③ 환경경영 인증제도 본격가동(96년중): 인증/연수기관 지정·운영